#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38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양부남・김한규・민병덕

민형배 • 박균택 • 박정현

안도걸 • 전진숙 • 정진욱

허성무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 촌 이내 혈족·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 법률 제 호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4(친족 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4급이상 공무원은 본인 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국가공무원법」 제 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사무처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의 친 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4급 이상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처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공개) ① 4 본인과 본인의 이내의 혈족· 무원법」 제2	
임용되는 경- 그 사실을 신크 ② 사무처는 고사항을 인터 에 게재하는 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신고사항의 시 법원행정처장 의 장에게 필 정보의 제공에 청할 수 있다. 받은 법원행정	제1항에 따른 신 넷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공개하 관 제1항에 따른 실확인을 위하여 또는 관계 기관 요한 자료 또는 관한 협조를 요 이 경우 요청을 처장 또는 관계 특별한 사유가 없

<u><신 설></u>

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 로 정한다.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의 친인척 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 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